2020년 남하면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0. 12. 17. ~ 12. 22. / 4일간
○ 감사범위 : 2018. 2. 1. ~ 감사일 현재
○ 감사인원 : 감사담당주사 등 6명

Ⅱ 감사결과

1 예산회계분야

1) 신용카드 발급, 보관·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 신용카드별로 부여된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으나,
○ 관리공무원 교체 시 지방자치구매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상호 확인 및 비밀번호 변경 미이행

2) 건설공사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기간 산정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함에도,
○「000000 배수로설치공사」등 11건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합하지 않음에도 하자보증서 및 하자보증각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등 계약업무 소홀

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업무 소홀

○ 2018. 3월부터 2020. 11월까지 장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공제) 가입 여부 및 정기검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표준계약서 기재사항 및 확인사항을 누락한 채로 계약

○ 공사현장에서 임대장비의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책임한계에 따른 분쟁을 초래할 소지가 있음.

2 건설분야

1] 건설공사 운반거리 확인 소홀 및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안부 예규 제90호)' 등에 따라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해야 함에도,

○「000000 배수로설치공사」등 7건에 대하여 설계내역과 실제사토장의 사토거리의 차이가 있음에도 계약금액 조정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준공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 소홀

2] 건설공사 폐기물처리 확인 소홀

○「△△△△△ 용수로 정비공사」등 18건에 대하여 준공 시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중량계근표 등 건설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준공서류보완제출 미요구,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업무 소홀로 ***천 원을 과다 지급

3]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처리 소홀

○「▽▽▽▽ 세천 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표시된 부직포를 미설치 하였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조치 없이 준공처리하여 ***천 원을 과다 지급하여 공사감독 및 준공처리 업무 소홀

3 세무분야

1)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장 관리 소홀

○ 저율분리과세되는 농지의 경우, 별도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와 세율의 격차가 큰 토지이므로 그 이용현황을 조사하는 작업이 정기분 재산세가 부과되기 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나,

○ 토지의 이용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전년 과세대장과 동일하게 운영, 실제 이용현황이 농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저율 분리과세 되도록 하여 과세대장 관리를 소홀히 함.

2) 가설건축물 재산세 과세대장 관리 소홀

○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완료한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것은 비과세하고 있으나 존치기한이 1년 이상이 되는 것은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축조신고가 완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즉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 비과세로 관리하여야 하며,

○ 등재 후 비과세로 관리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은 존치기한이 1년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과세하여야 함.

○ 남하면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치기한 1년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일반과세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등 재산세 과세대장 관리 소홀

3) 상속개시에 따른 취득세 과세 누락

○ 취득세는 신고·납부방법에 의해서 징수되는 세목이나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제척기간 내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함에도,

○ 남하면에서는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해 그 신고기한이 경과되었으나 수시부과를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종세포함) *,***,***원 누락

4) 주민세(재산분) 과세누락

○ 주민세(재산분)는 신고·납부방법에 의해서 징수되는 세목이나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제척기간 내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함에도,

○ 남하면에서는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연면적 330㎡ 이상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전년 과세대장과 동일하게 운영함으로써 신규 사업장과 사업자를 과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여 주민세(재산분) ***,***원 누락

4 복지분야

1) 사례관리 종결대상자 관리 업무 소홀

○ 사례관리 종결 대상자 윤00 등 7세대에 대하여 3개월 이내 최초 모니터링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 결과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모니터링 방문 상담 및 상담결과 입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례관리 종결대상자 관리 업무 소홀

2) 기초생활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 미흡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권00 등 4세대에 대하여 의사무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급여관리 지정 및 본인관리 확인서 미징구, 수급자 본인급여관리 사유로 급여관리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정00은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를 수리 및 보관하여야 하나 누락, 지정된 급여관리자가 요양시설 입소하여 급여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기초생활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업무 소홀

3) 장애인 자동차표지 관리 업무 미흡

○ ‘2020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1’에 따라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반환기간을 2주 후로 지정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송달하여 복지카드를 회수하고 폐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장애인 사망자 고00 등 14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미발송, 복지카드를 회수 및 폐기 미조치

4) 저소득 장애인 심사용 진단서발급비 지원 업무 소홀

○ 「2020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1」따라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등록에 대해 기초수급자 신규 및 재판정과 차상위계층의 재판정 시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 지원 누락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상 서비스 누락 대상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저소득 장애인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대상 10명 중 단 2명에게만 진단비를 지원하고 그 외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 누락

5 주민분야

1)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기재요령 미준수

○ “주민등록사무편람”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부여 시 행정자치부에서 배부한 “주민등록번호조립부”에서 각 개인의 해당번호를 찾아서 그 번호의 숫자에 연필로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이00 등 7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연필이 아닌 빨간색 펜으로 표기

2)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접수 결재 누락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위한 위임장을 접수 처리하면서, 2018. 2월부터 2019. 7월까지 총 57건의 위임장에 대해 「거창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담당주사 전결 누락

⑥ 기타분야

1) 기간제 근로자 산재보험 미가입

○ 근로자의 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함에도「◇◇◇◇ ◇◇살리기 사업」등 13건을 시행함에 있어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하고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 미설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청사방범용 CCTV 2대에 대해 안내판 미설치

3) 이륜차 사용신고 시 수입인지 미첨부

○ 이륜차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 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륜자동차 제작증 또는 자동차 양도양수증명서 등)에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3,000원)를 첩부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신고를 수리하거나 수입인지 대신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등 이륜차 등록업무 소홀

4) 특별휴가(포상휴가) 사용 부적정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특별휴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임00이 착오 신청한 특별휴가(포상휴가) 승인